|  |
| --- |
| 근저당권설정계약서 |
| 채권최고액 : 일금 원정 (\ 원)부동산의 표시- 이상 – |
|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하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함. 년 월 일 |
| 근저당권설정자겸 채무자 : (인) 주소근 저 당 권 자 : (인) 주소 |

- 아 래 -

|  |  |
| --- | --- |
| 제1조 |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, 각서,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앞에 기재된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 |
| 제2조 |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 지라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. |
| 제3조  |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. |
| 제4조 |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될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. |
| 제5조  |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 보증책임을 진다. |
| 제6조  |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 끝. |